

규제심사대상 확인

접수번호 : 제 2024-5173호

제 목 :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(유효기간 연장)

위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(유효기간 연장)을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 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24. 10. 10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